



2024학년도 정기고사 평가 계획

교무실

☎ 533-4124

배영중학교 학생,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<2024학년도 평가계획>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학생들이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. 학생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
1. 시험 일정

고사명	구분	시험 과목	학년	시험 일자	방법	비고
영어 듣기평가	영어 듣기	전 학년		4월 2일(화-1학년) 4월 3일(수-2학년) 4월 4일(목-3학년)	듣기평가	수행평가반영 (1학년 미반영)
1학기 1차 고사	8과목	2, 3학년		4월 24일(수)~4월 26일(금)	지필 평가	성적표 발송
1학기 2차 고사	8과목	2, 3학년		7월 3일(수)~7월 5일(금)	지필 평가	성적표 발송
영어 듣기평가	영어 듣기	전 학년		9월 3일(화-1학년) 9월 4일(수-2학년) 9월 5일(목-3학년)	듣기평가	수행평가반영
2학기 1차 고사	8과목	전 학년		9월 30일(월)~10월 2일(수)	지필 평가	성적표 발송
2학기 2차 고사	8과목	전 학년		12월 4일(수)~12월 6일(금)	지필 평가	성적표 발송

가. 1학년 1학기 : 자유학기제 적용으로 지필·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고, 생활기록부 과목별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’란에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의 특성,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, 활동 내역(체육·예술 과목은 실기능력, 교과적성 포함) 등을 문장으로 입력함

나. 1학년 2학기 시험 과목 8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사회, 도덕, 정보, 기술·가정

다. 2학년 시험 과목 8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역사, 사회, 도덕, 기술·가정

라. 3학년 시험 과목 8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역사, 사회, 한문, 기술·가정

마. 2·3학년 음악, 미술, 체육교과는 수행평가 100% 반영

바. OMR 답안지는 수정테이프로 정정 불가하므로 객관식 마킹을 정정할 경우 답안지 교체, 서술형(서답형 포함)답안을 정정할 경우 두 줄 긋고 재작성

2.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

가. 10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(일 단위로 적용)

- 1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- 2)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
- 3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“학교·시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「학교보건법」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
- 4)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
- 5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
※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
- 6)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(본회의,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)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%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
- 7)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

나. 80%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(하루 단위로 적용)

- 1) 질병으로 인한 결석(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)
- 2)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(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)
- 3)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 시 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

다.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(-1)으로 부여하는 경우: 미인정결석

- ※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는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시를 한 학생은 출석 인정은 하되, 인정점은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한다.
- ※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기관(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) 위탁 학생 중 우리학교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, 시험 점수 인정비율은 최하점의 차하점(-1)으로 부여한다.

라.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

- 1)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
- 2) 부정행위 협조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

마.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

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

$$\text{최종 인정점} = \text{기준 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기준고사 평균}} \times \text{인정 점 부여비율}$$

3. 이의신청 기간 운영

가. 이의신청 기간: 이의신청(학생이 본인의 점수를 확인 한 후 3일 이내) 및 정정 기간은 학교 교과별(학년별)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, 학업성적관리규정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고,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지한다.

4.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 처리기준

구분	내 용
부정 행위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✓ 휴대전화 문자 전송, 이어폰 사용, 음성 메시지 전송,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✓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✓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✓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흘려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✓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✓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✓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✓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✓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✓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✓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,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✓ 팔짱을 끼고 한 손으로는 문제번호, 다른 한 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✓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(주로 기침)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줌 ✓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서 다른 학생이 주움(기름종이 등) ✓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줌 ✓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, 볼펜 속에 보관 ✓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✓ 시험 종료 후(또는 시작 전)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: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(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) <p>* 이 외의 사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준하여 적용</p>
부정 행위 예방 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✓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불시에 좌석 이동 조치 가능 (사전 협박에 의한 부정행위 방지에 도움) ✓ 감독 중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행동을 필히 주시 ✓ 문제지 혹은 답지의 글씨가 지나치게 크거나 진하면 경계 ✓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 다른 학생이 답안을 볼 수 없도록 유의하고, 필기도구는 전하지 않은 것 사용 ✓ 종료령이 울리면 모두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답안지를 회수 ✓ OMR 답안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OMR 답안지는 반드시 회수하며, 평가 담당 교사가 철저히 관리 ✓ 감독교사가 1명인 경우 답안지 서명 보완책 강구(서명 중 부정행위 발생) ✓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가 잘못된 사항 이외에는 질문을 받지 않음. 부득이한 경우 손을 들어 감독교사의 조치를 받게 함(학생들의 소리, 동작 등 유의).
부정 행위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✓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,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✓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✓ 부정행위 가담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

2024. 3. 7.

배영중학교장

